

세계은행그룹

청렴 컴플라이언스 지침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이하 'WBG')은 제재(SANCTION)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9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WBG 제재 절차에 따른 사건들은 '조건부 해제(종결)를 수반하는 금지(DEBARMENT WITH CONDITIONAL RELEASE)'를 기본적인 제재로 삼게 됩니다.

나아가, WBG은 제재의 종결 여부(금지 및 조건부 비금지, 또는 금지의 조기 종결)를 판단함에 있어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TEGRITY COMPLIANCE PROGRAM)이 수립되었는지 또는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2010년 9월, 세계은행 청렴국 부총재(INTEGRITY VICE PRESIDENCY)는 청렴 준수 담당자(INTEGRITY COMPLIANCE OFFICER, 이하 'ICO')를 임명하였습니다. ICO는 제재대상 기업(또는 개인)의 청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물론, WBG의 제재위원회(SANCTIONS BOARD) 또는 제재 평가 담당자(EVALUATION AND SUSPENSION OFFICER)가 설정한 제재 종결 조건이 만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재 절차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WWW.WORLDBANK.ORG/SANCTIONS 를 방문하시기 바라며, 부패 방지를 위해 세계은행이 노력하고 있는 더 많은 사항은 WWW.WORLDBANK.ORG/INTEGRITY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THE WORLD BANK
IBRD • IDA | WORLD BANK GROUP

1. 부정행위 금지: 부정행위(사기, 부패,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강요)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기업의 윤리 강령 또는 유사한 문서, 통지문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2. 책임: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를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2.1. 리더십: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는 청렴 준수 프로그램(Integrity Compliance Program, 이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확립을 강력하고, 가시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로 지원하고, 이러한 헌신이 조직의 문화로 드러나고 서면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2.2. 개인 책임: 프로그램 준수는 의무적이고, 제재당사자에 소속된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개인의 의무입니다.

2.3. 준수 기능: 프로그램의 감독 및 관리는 1명 이상의 고위 간부가 담당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자율성, 충분한 자원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시작, 위험 평가 및 검토: 적절한 프로그램을 확립함에 있어, 기업의 크기, 사업 분야, 사업 수행 지역 및 기타 제재당사자의 특유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경영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기, 부패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초기(또는 개선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 평가는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하며,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당해 프로그램의 적합성, 타당성 및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를 예방, 탐지, 조사,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발전 및 발전하는 국제 및 산업 표준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결점이 발견되면, 제재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더 이상 유사한 결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내부 정책: 제재당사자 및 소속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방지, 탐지, 조사 및 교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치,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프로그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4.1. 직원에 대한 실사: 경영진 및 이사진을 포함한 의사결정권자, 또는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유효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4.2. 전직 공무원과의 계약 제한: 사임 또는 은퇴한 공무원 및 그와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관하여, 그가 재직 중 수행했던 역할이나 감독했던 기능,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고용계약 또는 대가성 계약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4.3. 선물, 접대, 향응, 여행 등 경비: 선물, 접대, 향응, 여행 등 기타 경비 지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지출이 계약 및 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정치 기부금: 정당, 정당원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는 반드시 관련 법에 부합하여야 하고, 비밀 유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 기부금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4.5. 자선 기부금 및 후원: 제재당사자는 기부금 등이 부정행위를 적법하게 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비밀 유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기부금 및 후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 4.6. **급행료:** 제재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행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¹.
- 4.7. **기록 보관:** 상기 4.3-4.6 사항 관련 지출금 및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 4.8. **사기,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강요:** 부패뿐만 아니라 사기,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강요 사례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장치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5. 사업파트너에 대한 정책: 제재당사자와 주요한 사업 관계가 있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업파트너(이하 ‘사업파트너’)에 대하여, 제재당사자는 사업파트너가 부정행위를 예방, 적발, 조사, 경감하는 데 있어 제재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사업파트너가 제재당사자의 계열사, 합작투자사, 비법인사단 또는 그에 준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파트너가 동일한 노력을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파트너에는 사업파트너의 대표자, 대리인, 컨설턴트, 판매업자, 공급업자, 수급인, 합작투자업자 및 기타 제3자가 포함됩니다.

- 5.1. **사업파트너에 대한 실사:** 사업파트너와 사업 관계를 시작하기 전, 적절히 서면화 된 위험 관리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사업파트너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기록되지 않은 수익자를 포함), 이는 사업 관계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계약자, 공급업자 또는 다른 사업파트너와 사업 관계를 체결하는 것(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위험 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을 피하여야 합니다.
- 5.2. **사업파트너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고지:** 제재당사자의 프로그램을 모든 사업파트너에게 고지하고, 사업파트너를 대표하는 모든 활동은 위 프로그램을 준수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5.3. **상호 약속:** 제재당사자는 사업파트너와 서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사업파트너에게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제재당사자는 사업파트너의 활동 및 환경을 감안하여 견고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 5.4. **서면화:** 제재당사자와 사업파트너의 거래 관계는 모두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5.5. **적절한 보상:** 사업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해당 사업파트너가 제공한 합법적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보상이어야 하고, 선의의 경로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5.6. **감시/감독:** 제재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사업파트너와의 모든 계약 이행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재당사자는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사업파트너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그 이행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6. 내부 관리:

- 6.1. **재무적 관리:** 재무, 회계, 기록보존 및 기타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하여 재정 및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내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재당사자는 내부 관리 체계의 설계, 구현, 효과에 대한 객관적 확신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관리, 특히 회계 및 기록보존 기능에 대해 정기적, 독립적인 내/외부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6.2. **계약상 의무:** 고용계약 및 사업계약에는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관련되었을 경우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보상 방안, 벌칙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사업계약의 경우, 사업파트너가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 계약해제 등 사업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조항 포함).

¹ 급행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재 당사자는 매번 ICO에게 급행료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사항에는 해당 금원이 급행료로 인정되는 것인지, 하급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소규모의 금액으로 한정하였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6.3. 의사 결정 과정: 거래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각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권한을 설정하고 적절한 과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7. 훈련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알리기 위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제재당사자에 소속된 모든 직급의 임직원(특히, 부정행위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사업파트너에게까지 프로그램에 있어 각각의 필요성, 상황, 역할, 책임 등에 맞추어진 효율적인 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재당사자의 경영진은 이러한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연간보고서에 게재하거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공중에 공개 또는 전파하여야 합니다.

8. 인센티브:

8.1. 긍정적: 제재당사자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촉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재당사자에 소속된 모든 직급의 임직원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8.2. 징계 조치: 부정행위 또는 프로그램 위반행위에 연루된 임원, 이사 등 제재당사자에 소속된 모든 직급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해고를 포함)를 취하여야 합니다.

9. 보고:

9.1. 보고 의무: 자신의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프로그램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적절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제재당사자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9.2. 조인: 경영진, 임직원 및 (적절한 경우) 사업파트너에게 프로그램 준수에 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또는 매커니즘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책 또는 매커니즘은 경영진 등이 외국 관할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조인이 필요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9.3. 내부고발/핫라인: 상사의 지시 또는 강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제재당사자 내부에서 프로그램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려는 사람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보안이 유지되는 수단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재당사자는 이러한 고발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9.4. 주기적 확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서면을 통하여 제재당사자의 윤리 규정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제재당사자가 그동안 프로그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다른 임직원 또는 사업파트너에 의한 프로그램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정된 컴플라이언스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부정행위 해결:

10.1. 조사 절차: 제재당사자가 직접 겪거나, 보고받거나 적발한 부정행위 또는 프로그램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10.2 대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제재당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나 프로그램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11. 공동 대응: 제재당사자는 적절한 경우—특히 중소기업이나 프로그램이 확립되지 않은 기업, 또는 확립된 프로그램이 있는 대기업, 무역협회,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유사단체를 위하여—실업단체, 산업 공동체, 전문 협회 및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다른 단체들이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확립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세계은행그룹 청렴 컴플라이언스 지침은 많은 기관 및 단체가 공인하는 거버넌스, 반부패 관련 기준, 원칙 및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원칙적으로 제재당사자를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아닌 기관들도 이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지침은 포괄적이거나 배타적, 규범적인 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추어 본 지침을 적용 또는 변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